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이종욱 · 배준영  
김미애 · 이현승 · 김예지  
김기웅 · 유용원 · 김상훈  
송석준 · 김장겸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,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

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, 제11조제2항 및 제3항).

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1의3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각각 “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 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<u>중소기업</u>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~ 11. (생략)</p> <p>제11조(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<u>중소기업</u>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비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조제1항에 따른 <u>소상공인</u>을 말한다.</p> <p>1의3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<u>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중견기업</u>을 말한다.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</u>-----</p>

을,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

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-----.